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제정 1982. 3. 1. 개정 1986. 11. 27.
개정 1992. 7. 18. 전문개정 1993.6. 28.
개정 1994. 9. 26. 개정 1997. 7. 14.
개정 1998. 9. 23. 개정 2001. 9. 1.
개정 2002. 12. 31. 개정 2003. 5. 1.
개정 2003. 7. 23. 개정 2007. 6. 26.
개정 2008. 2. 13. 개정 2009. 2. 2.
개정 2012. 7. 12. 개정 2013. 3.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3조에 의하여 순천대학교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생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6. 26.)

② 삭제 (2007. 6. 26.)

③ 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07. 6. 26.)

④ 생활관에 감사 1인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 3. 08)

제3조(임무) ① 관장은 생활관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한다.

② 삭제 (개정 2007. 6. 26.)

③ 감사는 생활관의 운영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3. 3. 08)

제4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은 개학기간에 한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일시 폐관할 수도 있다. (개정 2013.3.08)

제5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시설물은 생활관 운영의 목적외에 교육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08. 2. 13)

제2장 위원회 (개정 2009. 2. 2.)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생활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 2. 2.)

1. 학생생활관운영위원회

2. 민간투자 시설사업 성과평가 위원회

② 민간투자 시설사업 성과평가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2. 2.)

제8조(기능) 학생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운영규정의 제정과 개·폐 (개정 2008. 2. 13)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제청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관장·총무과장·경리과장·교무과장·학생지원과장·학생생활관 행정실장 및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07. 6. 26)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실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입실와 퇴실

제11조(입실자격 및 선발) ① 생활관에 입실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하되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1. 9. 1, 개정 2008. 2. 13, 2012. 7. 12)

1. (1997. 7. 14.삭제)

2. (2001. 9. 1.삭제)

3. (1997. 7. 14.삭제)

② (삭제 2008. 2. 13)

③항(1997. 7. 14.삭제)

제12조 (삭제 2008. 2. 13)

제13조(제출서류) 생활관에 입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실신청서 1부 (개정 2001. 9. 1, 2008. 2. 13)

2. (삭제 2008. 2. 13)

3. 건강진단서(지정의료기관) 1통

4. (삭제 2008. 2. 13)

제14조(퇴실처분) ①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지도원과 관생수칙을 둔다. (개정2012. 7. 12)

② 관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실처분을 한다. 이에 따른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2012. 7. 12)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개정2012. 7. 12)

2.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개정2012. 7. 12)

3. 생활관 납부금을 미납한 사람(개정2012. 7. 12)

4. 관생수칙을 위반한 사람(개정2012. 7. 12)

제15조 (삭제 2008. 2. 13)

제4장 경비

제16조(경비부담)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는 경비 이외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납부금 및 납부기간) ① 관생은 관리비 및 급양비 등 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13)

②관리비와 급양비는 학기납으로 한다. 다만, 추가입실한 사람의 관리비 및 급양비는 일 단위로 환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2.12.31, 삭제 2008. 2. 13)(개정2012. 7. 12)

③ 관리비 및 급양비 환불은 관생수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13)

제18조(납부금의 용도) ① 관리비는 인건비 및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② 급양비는 주식·부식비 및 기타 식사 조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19조(손해배상) 생활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2012. 7. 12)

제20조(예산과 결산) ① 관장은 회계연도 개시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지체없이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7.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6. 28)

이 규정은 1993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9.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5.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